

# 악취관리강화-『악취관리지역』 지정, 엄격한 배출허용기준 설정

하수처리장이나 쓰레기소각장 인근에 사는 주민들이 오·폐수 등과 쓰레기 냄새로 악취를 견디다 못해 해당지자체에 많은 민원을 제기하고 있어 이로 인한 법적분쟁문제와 납비현상이 갈수록 늘어나고 있다. 이에 따른 해결방안의 하나로 지난해 2월 악취방지법이 제정·공포되어 금년 2월부터 시행에 들어갔다. 악취는 환경정책기본법상 대기오염, 수질오염, 소음·진동 등과 함께 독립된 환경오염으로 정의하고 있지만 대기매체인 관계로 그동안 대기오염물질의 일부로 관리되어 왔었다. 금년부터 새롭게 달라진 악취방지법의 주요내용을 간략히 살펴보고자 한다.

<편집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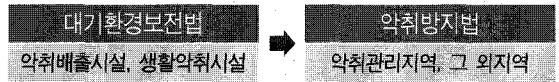
## 1. 악취방지법의 주요 내용

- 악취방지를 위한 국가·지방자치단체·국민의 책무 규정
- “악취민원이 3년이상 지속되고 인근지역의 악취가 배출허용기준을 초과하는 경우”와 “집단민원 발생 산업단지·공업지역 등”은 시·도지사가 “악취관리지역”으로 지정 관리

새로운 악취방지법의 특징은 국가·지방자치단체·국민의 책무를 규정하고, 악취관리 대상을 “시설”에서 “지역”으로 확대하였다는 것이다.

국 가	악취방지 종합시책 수립, 지자체 지원, 기술개발·보급 등
지자체	관할구역 악취방지시책 수립, 주민에 재정적·기술적 지원
국 민	악취방지 노력, 국가 및 지자체 악취방지시책에 협조

## ▶ 악취관리대상 변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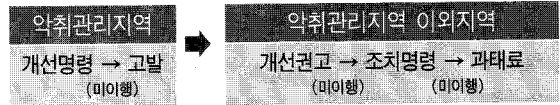
또한 종전에 정부가 시·도지사에게 위임하여 관리하던 악취관리 업무를 시·도지사의 고유 업무로 변경한 것으로, 시·도지사가 「사업장에서 배출되는 악취를 규제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지역을 악취관리지역으로 지정」할 수 있도록 한 것이다.

- 악취관리지역 지정 요건으로는 “악취로 인한 민원이 3년 이상 지속되고 인근지역의 악취가 배출허용기준을 초과하는 경우”와 “악취민원이 집단적으로 발생하거나 배출허용기준을 초과하는 산업단지, 공업지

역 등”으로 규정 하였다.

- 악취관리지역으로 지정되면 시·도지사는 조례로 엄격한 배출허용기준을 설정할 수 있고, 사업자에 대해 시설개선명령·사용중지명령 등 행정처분이 가능하며, 악취배출시설을 설치한 사업자는 배출시설 설치신고, 악취방지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 악취관리지역이 아닌 사업장도 악취 배출허용기준을 준수하여야 하나, 배출허용기준 초과시 행정처분은 악취관리지역보다 완화되었다.



악취관리에 대한 규제체계 비교

정전(대기환경보전법)		현행(악취방지법)	
대기오염배출시설	생활악취시설	악취관리지역내	악취관리지역 밖
전국	전국	악취관리지역 내 (시·도지사 지정)	악취관리지역 밖 (시장·군수 관리)
배출시설 설치허가 또는 신고(방지시설포함)		배출시설 설치 신고 (악취방지계획 포함)	
↓		↓	
방지사설 설치		방지계획 이행	
↓		↓	
가동개시 신고	생활악취시설운영	가동개시 신고 의무 없음	사업장 운영
↓	↓	↓	↓
배출시설 및 방지사설의 운영	악취배출허용기준 준수를 위한 조치	배출시설 및 방지사설의 운영	별도의 조치를 취할의무는 없음
↓	↓	↓	↓
배출허용기준 준수	배출허용기준 준수	배출허용기준 준수 (엄격한배출허용기준)	배출허용기준 준수
↓	↓	↓	↓
기준초과	기준 초과	기준 초과	기준초과
↓	↓	↓	↓
개선명령	조치·개선명령	개선명령	개선권고
⇨ 시설에 대하여만 규제		⇨ 지역관리위주의 규제	

▶ 참고로 악취측정방법은 복합악취는 공기희석관능법을, 단일물질에 의한 악취는 기기분석법으로 측정하게 되며, 종전에 현장에서 직접냄새를 맡아 측정하던 직접관능법은 사용하지 않는다.

※ 공기희석관능법 : 채취한 시료를 실험실에서 냄새가 전혀 없는 공기로 냄새가 전혀 나지 않을 때까지 희석하였을 때의 공기희석배수로 판정

※ 기기분석법 : 현장에서 채취한 시료를 실험실에서 측정분석장비를 이용하여 악취물질 농도를 분석

〈추가된 지정악취물질〉

기존 지정악취물질(중)	신설 지정악취물질(중)
암모니아, 메틸메캅탄, 황화수소, 다이메틸설파이드, 다이메틸다이설파이드, 크라이메틸아민, 아세트알데히드, 스타이렌	프로피온알데히드, 뷰티르알데히드, n-발레르알데히드, iso-발레르알데히드

## 2. 악취주범은 공단지역, 지자체 - 악취관리 향후 강화

### • 서울시, 하수처리장 비롯한 농산물처리장 주변

서울시에서는 별도의 악취관리지역 지정에는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보고 악취관리지역에 준하는 형태의 규제는 아니지만 강서구를 비롯한 성동구 등의 공업지역에 대해 현행 잣대로 안되는 강화방안에 주력해 나갈 예정이다. 또한 공업지역 이외에도 하수처리장을 비롯한 농산물처리장 주변 20여개소를 자치구에서 선정하도록 하여 보건환경연구원에서 1차로 악취정도를 측정케하여 결과치를 토대로 관리방안을 더욱 강화해 나갈 계획이다.

• 부산시, 사상공단, 신평장림공단등 공단지역 위주 사상공단을 비롯한 신평장림공단, 녹산산업단지 등 공단지역위주로 이해관계가 수렴된 건의의 요청과 함께 악취관리지역 지정확률이 높을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 • 인천시, 폐수처리업체와 폐수재이용업체 중심

### • 대구시, 비산염색공단 등

공단지역을 우선적으로 악취관리지역으로 지정해 나갈 것으로 보인다. 특히 인천시 서구의 경우 폐수처리업의 수탁업체와 수처리 등의 폐수재이용업체가 전

국의 3분의 2이상이 산재해 있는 현실적인 측면을 감안할 때 소각 증발처리로 인한 냄새가 불가피해 별도의 악취관리지역 지정이 예상된다. 대구시의 경우에도 비산염색공단을 비롯하여 제3공단, 성서공단 등에서 악취관리지역 지정확률이 높아질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 • 광주시, 평동, 첨단, 본촌 등

### • 울산시, 악취방지특별개선대책 데이터베이스화

광주시의 경우에는 하남을 비롯한 평동, 첨단, 본촌, 소촌공단 등에서 악취관리지역 지정 확률이 높아질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울산시의 경우 환경문제가 심각하여 오래전부터 관리를 하고 있으며 악취문제는 큰 변수로 작용하고 있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악취방지특별개선대책을 데이터베이스화하여 체계적인 감시체계를 구축하고 있는 상태이다.

### • 대전시, 4개 산업단지 단계적 악취방지 추진 - '07년까지 현재보다 악취 70% 저감 목표

대전시의 경우에도 1, 2, 3, 4 산업단지에 대한 악취방지대책을 단계적으로 추진해 나가고 있다. 1, 2 산업단지의 경우 70년대 후반부터 조성되기 시작한 공단으로 대덕구 대화동에 80여개가 소재하고 있고, 3,4 단지의 경우에는 대덕구 신탄진에 100여개 업체가 소재하는 등 총 180여개의 공단이 주거환경지역에 있으며, 철강공장을 비롯한 제지, 타이어, 하수종말처리장, 쓰레기매립장과 소각장이 산재해 있어 악취문제는 심각한 수준으로 알려져 있다. '04년에 악취저감방안에 대한 용역사업을 통해 10개업체를 대상으로 자율환경개선협약을 실시한 바 있으며 오는 '07년까지 현재보다 악취를 70% 저감시킨다는 목표로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대전시는 악취방지를 위해 업소별로 실태를 파악해 시설관리주체에서 시설개선투자비로 101억을 투자하는 등 전국에서 가장 모범적인 악취방지정책을 추진하고 있어 관심을 끌고 있다.